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안내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 및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(2021. 6. 23. 시행, 2022. 12. 13. 일부개정)에 따라 **교사자격 취득 요건**에 대한 **결격사유**를 다음과 같이 조회 확인할 예정이오니,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향후 교원자격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조회근거

○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
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

> **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>
> 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>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>
>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>
>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>
> 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□ 조회대상

○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

□ 조회사항

○ **(성범죄경력)** 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일괄 조회

※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음. **동의하지 않는 경우** 신청인이 **직접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제출**해야 함.

○ **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)** 개인별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괄 조회 가능

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절차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(개인별 제출)

▪ **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,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**

신청인(개인)	의료기관	신청인(개인)	교원양성기관
병원 검진 ▶	검사 후, **검사결과통보서** 또는 **진단서 발급** ▶	교원양성기관에 **검사결과통보서** 또는 **진단서 제출** ▶	**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**

▪ **중독 여부 진단 방법**

1차검사* ▶	**음성 반응** ▶	**검사결과통보서 발급·제출**	- 병원 방문 수령, "양성/음성" 결과 기재
	양성 반응 ▶	2차 검사(음성) 또는 의사 상담 후, **진단서 발급·제출**	- **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**의 경우 '양성' 반응 시 → **진단서 제출** 필요 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 ("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" 기재)

*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

□ 중독여부 관련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

○ **(제출서류)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**을 증명하는 의사의 **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** ※ [붙임 2·3] 참고

※ **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**는 **1차** 검사에서 **'양성' 반응**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**중독자**가 **아님**을 **명시**한 **'의사의 진단서' 제출**

※ 타 법령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용 등)도 '중독자가 아님'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 가능

○ **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·발급**된 경우만 인정

※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마약류 검사 결과도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검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
○ **(검진기관) 보건소**는 판별검사 **불가**하며, **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**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예약 필요)

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
□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

○ **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**:「붙임1」

○ **중독 여부*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**:「붙임 2・3」

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)이 아님을 증명

※ **「붙임 2·3」 중 택 1**, 검사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(진단서) 요청이 있을 수 있음

□ 문의사항

○ 결격사유 등 교원자격취득 사항 관련: 02-3475-2213(교무처)

○ 검진 예약·서류 발급 관련: 각 의료기관

※ 서류발급 비용, 검진절차, 소요기간 등은 각 의료기관 별 상이하므로,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붙임

○ 「붙임1」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
○ 「붙임2」 <예시>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

○ 「붙임3」 <예시>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

붙임1 **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**

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2022.12.13. 시행>
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
※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5일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검정 신청 자격	**초등학교 2급 정교사**			

자격요건	출신학교명	서울교육대학교	과(전공)	**[V] 졸업** [ ] 수료
	연수명	해당 없음		
	경력	해당 없음		

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**(공통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**	수수료 없 음
담당자 확인 사항	**(공통)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제2호·제3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제2호·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**	

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제2호·제3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제2호·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붙임2 **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(예시)**

건강 진단서

원부대조필 인

병록번호 _____
연번 _____
주민등록번호 _____ - _____
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령	
주소				전화			
병 명							
소견	**위 사람은** **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** **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**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						
비고							
용도	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			진단일			
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	☐ TBPE ☐ 진단시약검사 ☐ 기 타( )						

발 행 일 :
의 료 기 관 :
주소 및 명칭 :
전화 및 FAX :
면 허 번 호 :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(인)

※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

붙임3 **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(예시)**

접수번호	

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

구 분	시험시행기관	접수번호	성 명	
검사시행			(한글)	
주민번호				
주 소		전화번호	집)	
			휴대폰)	

검 사 내 역			
TBPE검사		기준범위	
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담당의사: (인)

의사소견	
종합판정	
판정보류 소견	
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0000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(인)	
사용제한	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(전용)금지

※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, 사전확인 필요

-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(MEDI-CHECK)에서도 발급 가능

※ 상기 통보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